

# 가상자산 기부 관리 규정

제정 2026. 5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이 가상자산을 수령하기 위한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부금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기부금”이라 함은 교육, 연구, 장학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해 본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되는 현금과 현물 등을 말한다.
2. “가상자산”이라 함은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.
3. “가상자산심의위원회”라 함은 본 대학이 설치한 기구로, 기부받는 가상자산의 적정성, 처분계획, 내부통제체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대학이 가상자산 기부를 접수하거나 가상자산 실명계정 연결을 신청하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
제4조(기부금 접수 및 관리) 기부자(개인 또는 법인)가 본 대학에 출연하는 모든 가상자산 기부금의 접수는 발전기금소관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보고 및 승인) 가상자산 기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발전기금소관부서는 기부자, 기부목적 및 자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가상자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수증여부(受贈與否)는 총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접비 징수)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 기부금 모금 활성화(기부금품의 모집, 관리, 운영, 사용, 결과 보고 등)를 위하여 15% 범위에서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(가상자산심의위원회) 가상자산 기부의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심의위원회를 두며, 이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이해충돌 방지) 대학은 대학(교직원을 포함한다)과 기부자 간에 이해관계 등이 있

는 경우, 해당 기부금의 수령 거절 등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세칙 등)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준용규정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(자금세탁방지법령, 가상자산 관련법령),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교내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26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